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. 3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구제역 재앙속에서 대체 축산으로 주목받는 말산업을 육성하고 시민 여가 문화활동 다양화에 대비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 :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위탁관리

-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20번지 일원
- 면 적 : 90,129m²
- 시 설 물 : 클럽하우스, 실내마장, 마사, 실외마장 등

3. 운영전출금 : 연 321백만원 정도

- 운영전출금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사무관리비	공공운영비	재료비	비 고
321	86	51	81	103	

4. 관련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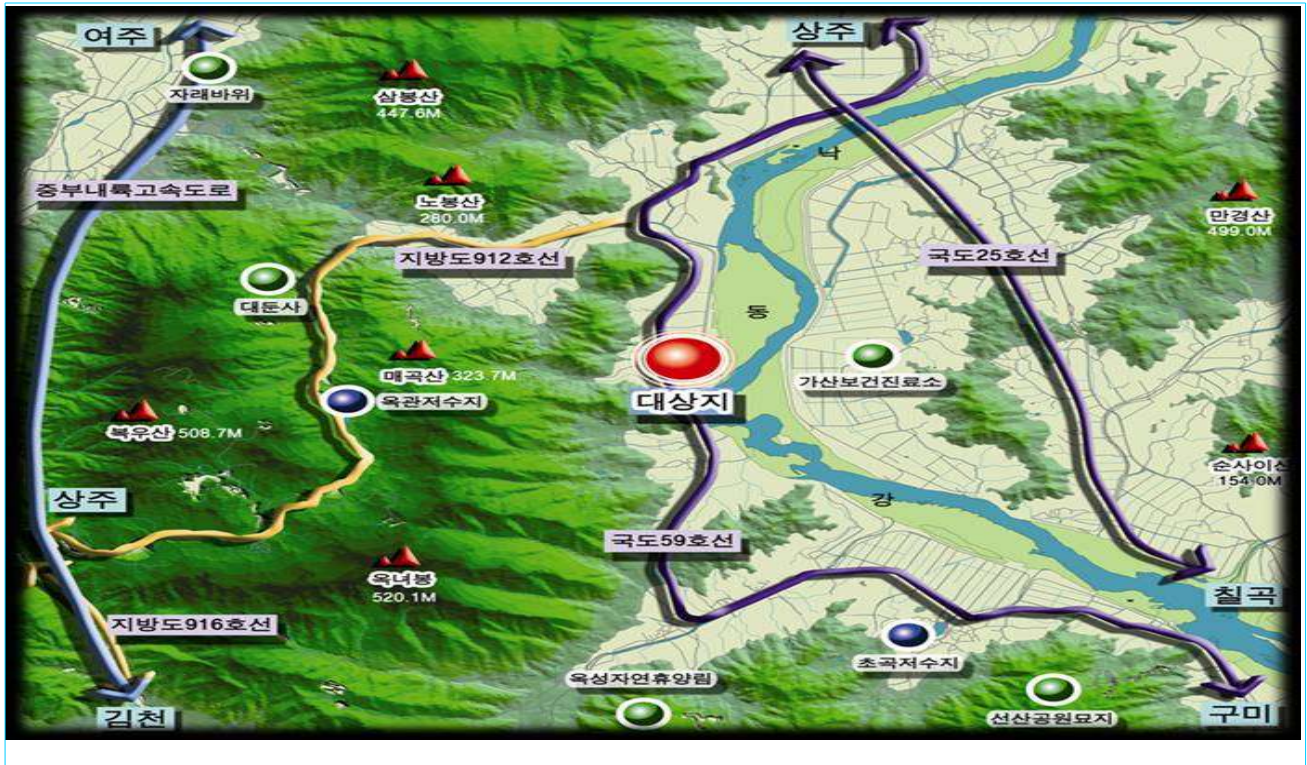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「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 제31조

승마장/공동육성조련시설 위탁시설 현황

구 분	시 설 물 내 역		비 고
클럽하우스 (1,051.11㎡)	지하1층 (270.16㎡)	전기실, 기계실,	
	지상1층 (424.02㎡)	관리실, 숙직실, 탈의실, 화장실	
	지상2층 (356.93㎡)	사무실, 강의실, 휴게실, 화장실,	
마사 (1,275.52㎡)	마구실, 세마실, 사육실(50칸), 사무실, 화장실		
운동시설 (20,114.6㎡)	실내마장(2,607.6㎡)		
	실외마장(15,544㎡)		
	원형마장(1,963㎡)		
기타시설	보관시설	창고(216㎡)	
	분뇨처리시설	퇴비사(252㎡), 오폐수 처리시설	
	전기기계 설비	태양광 발전, 냉난방, 소방 설비	
운영관리용품	사무용품	책상, 캐비닛, 강의실 음향시설	
	운영물품	트랙터 1대	

□ 위치도 및 조감도

위치도



조감도



관 련 법 령

◎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 (관리위탁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◎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-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◎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안

- 제31조(위탁운영)**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승마장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